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09호 2019. 10. 14.(월)

공 고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2

회람							
----	--	--	--	--	--	--	--

목포시 공고 제2019-1409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행정 수요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
- 기능중심의 조직 재배치, 당면 현안사업 추진 조직 강화, 최소한의 개편 등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 반영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로 개편코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관 : 9국 2실 43과 237팀 → 9국 1실 44과 237팀 (실 △1, 과 ⊕1)

□ ‘국’ 단위 개편

구 분	개 편 내 용	비 고
국 분리	○ 관광경제국 → <u>관광문화체육국</u> + <u>경제산업국</u>	관광과 경제 분리
명칭변경(1)	○ 기획문화국 → <u>기획관리국</u>	
통 폐 합(1)	○ 환경관리사업단+상하수도사업단 → <u>환경수도사업단</u>	

□ ‘과’ 단위 개편

구 분	개 편 내 용	비고
명칭변경 (1)	○ 기업유치실 → 기업유치과	
소속변경 (24)	○ 기업유치실 → 경제산업국 ○ 기획문화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 기획관리국 ○ 기획문화국 문화예술과 → 관광문화체육국 ○ 자치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 관광문화체육국 ○ 관광경제국 관광과 → 관광문화체육국 ○ 관광경제국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 경제산업국 ○ 환경관리사업단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 환경수도사업단 ○ 상하수도사업단 수도과, 하수과 → 환경수도사업단 ○ 상하수도사업단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 →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사업소)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 관광문화체육국	

□ 사업소 명칭 및 위치

- 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시설관리과 →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 음식물자원화시설 →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 재활용선별장 → 목포시 대양로 241-55(대양동)
- 환경수도사업단 수도과 →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 몽탄정수장 →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 남해수질관리사무소 →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
- 북항수질관리사무소 →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여성가족과-38653(2019.10.2.)

9. 입법예고 : 2019. 10. 14. ~ 10. 21.(7일간)

- 입법내용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증가 등 예산 수반사항이 아니므로 입법예고 기간 축소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530-701,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FAX 270-3579), 직접방문 등

○ 기타 문의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문화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안전도시건설국”을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감사실, 기업유치실”을 “감사실”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감사실장은 시정감사전반, 공직자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기업유치실장은 산단조성, 대양·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를 “감사실장은 시정감사전반, 공직자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획문화국에 두는 과)”를 “(기획관리국에 두는 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문화국에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시정기획·종합조정, 지시사항, 시의회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총괄, 지방보조금 관리, 미디어마케팅, 자치법규관리, 소송, 지역발전, 규제개혁추진, 광역행정, 인구정책,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시정기획·종합조정, 지시사항, 시의회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총괄, 지방보조금 관리, 자치법규관리, 소송, 지역발전, 정책개발, 규제개혁추진, 광역행정, 인구정책,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을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광경제국에 두는 과)”를 “(관광문화체육국에 두는 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관광경제국에 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

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를”을 “관광문화체육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기획 총괄, 관광 진흥·홍보, 미디어마케팅, 관광 사업 및 시설관리, 축제, 음악분수 업무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 노적봉예술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 교육지원,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체육진흥, 국제축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행사 공연·홍보, 문학관 관리·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운영·관리(부주산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포함),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 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전반,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상정·소상공인, 지식·문화산업, 산업단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운영, 미래성장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국제교류 및 협력, 에너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산단조성, 대양·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고용 업무, 청년 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항만정책, 항만물류, 공유수면관리·매립면허, 해양오염방지, 도서종합개발, 해양 레저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산산업, 해양자원 조성·보호, 어업면허, 수산물유통·원산지표시, 수산식품 업무에 관한 사항
6. 유통, 농업·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중전의 제16조) 제1호 각 목 외 부분 중 “**환경관리사업단**”을 “**환경수도사업단**”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상수도설치, 상수도시설 관리, 수질검사, 뽕탄정수장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하수도설치, 하수도시설 관리, 하천,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중전의 제16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해수질관리사무소

- 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시설운영, 하수처리, 수질관리, 중계펌프장,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중전의 제16조)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북항수질관리사무소

- 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시설운영, 하수분뇨처리, 수질관리, 중계펌프장,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감사실, 기획문화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동주민센터 소관에 관한사항”을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에 관한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기업유치실, 관광경제국, 환경관리사업단,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발전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도시발전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목포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④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⑤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⑥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⑦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 ⑧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 ⑨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환경관리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 ⑩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 ⑪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 ⑫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 ⑬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 ⑭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 ⑮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기업유치실장”을 “기업유치과장”으로 한다.

- ⑯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 ⑰ 목포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자치행정복지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 ⑮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 ⑯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 ⑰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 ⑱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 ⑳ 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 ㉑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 ㉒ 목포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제26조제3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 ㉓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 ㉔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환경관리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 ㉕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환경관리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 ㉖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환경관리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 ㉗ 목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환경관리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 ㉘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환경관리사업단장, 자치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상하수도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 자치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 ③①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환경관리사업단장**” 을 “**환경수도사업단장**” 으로 한다.
- ③②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자치행정복지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③③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기획문화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③④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기획문화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③⑤ 목포시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기획문화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③⑥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11조제2항 “**기획문화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③⑦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기획문화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③⑧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관광경제국장**” 을 “**경제산업국장**” 으로 한다.
- ③⑨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관광경제국장,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문예시설관리과장**” 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기획문화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④⑩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를 “**체육시설관리과**” 로 한다.
- ④⑪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상하수도사업단장**” 을 “**환경수도사업단장**”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상하수도사업단장**” 을 “**환경수도사업단장**” 으로 한다.
- ④⑫ 목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관광경제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④⑬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관광경제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제18조 “**관광경제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④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제3항 “**관광경제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④⑤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상하수도사업단**” 을 “**환경수도사업단**”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상하수도사업단**” 을 “**환경수도사업단**”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상하수도사업단**” 을 “**환경수도사업단**” 으로 한다.

- ④⑥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5항제2호 “**상하수도사업단**” 을 “**환경수도사업단**” 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07.12.31, 2008.7.28, 2009.8.3, 2010.3.29, 2011.6.20, 2011.12.26, 2012.3.30, 2012.12.17, 2013.6.19, 2014.12.29, 2016. 6. 7, 2016. 12. 19, 2018. 12. 17.>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4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환경수도사업단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환경시설관리과 - 음식물자원화시설 - 재활용선별장 · 수 도 과 - 몽탄정수장 · 하 수 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목포시 대양로 241-55(대양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 도시문화재과 · 공원녹지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남해수질관리사무소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자동차등록사무소	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기획문화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안전도시건설국</u> 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 ----- <u>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u> -----.
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직속에 <u>감사실, 기업유치실</u> 을 둔다. <u>감사실장은 시정감사전반, 공직자 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기업유치실장은 산단 조성, 대양·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u>	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 <u>감사실</u> 을 둔다. ---- <u>감사실장은 시정감사전반, 공직자 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u>
제6조 (<u>기획문화국</u> 에 두는 과) ① <u>기획문화국</u> 에 <u>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u> 를 둔다. ② <u>기획문화국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시정기획·종합조정, 지시사항, 시의회운영 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총괄, 지방보조금 관리, 미디어마케팅, 자치법규관리, 소송, 지역발전, 규제개혁추진, 광역행정, 인구정책,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u> 2. <u>문화예술진흥,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 노적봉예술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u> 3. ~ 6. (생략)	제6조 (<u>기획관리국</u> 에 두는 과) ① <u>기획관리국</u> 에 <u>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u> 를 둔다. ② <u>기획관리국장</u> -----. 1. <u>시정기획·종합조정, 지시사항, 시의회운영 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총괄, 지방보조금 관리, 자치법규관리, 소송, 지역발전, 정책개발, 규제개혁추진, 광역행정, 인구정책,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 ~ 5.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7조(자치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복지국에 <u>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u> 을 둔다.	제7조(자치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 ----- <u>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u> ----- -----.

② (생 략)

2. 교육정책, 교육지원,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체육진흥, 국제축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제8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를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기획 총괄, 관광 진흥홍보, 관광 사업 및 시설관리, 축제, 음악분수 업무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전반,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상정·소상공인, 지식·문화산업, 산업단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운영, 미래 성장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국제교류 및 협력, 에너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고용 업무, 청년 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항만정책, 항만물류, 공유수면관리·매립면허, 해양오염방지, 도서종합개발, 해양레저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산산업, 해양자원 조성·보호, 어업면허, 수산물유통·원산지표시, 수산식품 업무에 관한 사항
6. 유통, 농업·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2. ~ 5.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8조(관광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관광문화체육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을 둔다.

② 관광문화체육국장-----.

1. 관광기획 총괄, 관광 진흥홍보, 미디어마케팅, 관광 사업 및 시설관리, 축제, 음악분수 업무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 노적봉예술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 교육지원,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체육진흥, 국제축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행사 공연홍보, 문학관 관라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운영·관리(부주산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포함),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라·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를 둔다.

제10조 ~ 제15조 (생 략)

제16조 (생 략)

1. 환경관리사업단

가. ~ 다. (생 략)

<신 설>

<신 설>

2. 상하수도사업단

3. (생 략)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전반,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상장소상공인, 지식·문화산업, 산업단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운영, 미래성장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국제교류 및 협력, 에너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산단조성, 대양·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고용 업무, 청년 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항만정책, 항만물류, 공유수면관리·매립면허, 해양오염방지, 도시종합개발 해양분야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산산업, 해양자원 조성·보호, 어업면허, 수산물유통·유통지표시, 수산식품 업무에 관한 사항
6. 유통, 농업·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 제16조(현행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7조(현행 제16조와 같음)

1. 환경수도사업단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상수도설치, 상수도시설 관리, 수질검사, 뽕탄정수장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하수도설치, 하수도시설 관리, 하천,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4.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제17조 ~ 제19조 (생 략)

3. 남해수질관리사무소가. 남해환경수질관리사무소 시설운영, 하수처리, 수질관리, 중계펌프장,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삭 제>4. 북항수질관리사무소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시설운영, 하수분뇨 처리, 수질관리, 중계펌프장,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8조~제20조(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환경관리사업단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환경시설관리과 - 음식물자원화시설 - 재활용선별장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목포시 대양로 241-55(대양동)
상하수도사업단 · 수 도 과 몽탄정수장 · 하 수 과 · 남해수질관리과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 북항수질관리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 도시문화재과 · 공원녹지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문예시설관리사무소 · 시민문화체육센터 · 목포문학관	목포시 남농로 102(용해동)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목포시 남농로 95(용해동)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목포체육관 · 실내수영장 · 유달경기장 · 시립정구장 · 시립테니스장 · 시민테니스장 · 목포파크골프장 · 부주산테니스장 · 목포시궁도장 · 부주산축구장 · 부주산산악자전거경기장 · 부주산족구장 · 영산호카누경기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목포시 양을로 397번길 90(상동)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목포자연사박물관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시 남농로 135(용해동) 목포시 삼학로 92-98(산정동)
자동차등록사무소	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4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환경수도사업단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환경시설관리과 - 음식물자원화시설 - 재활용선별장 · 수 도 과 - 몽탄정수장 · 하 수 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목포시 대양로 241-55(대양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남해수질관리사무소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 도시문화재과 · 공원녹지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자동차등록사무소	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

관 계 법 령 발 책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사업소 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목포시 공고 제2019-1412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이 미비하고, 한중 정치관계에 의해 교류 여건이 좌우되어 우리시 국제교류의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하는 등 중국 편중 교류의 문제점 발생
- 국가 외교정책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외교정책추진 흐름에 따라 중국에 편중된 교류관계를 탈피, 국제교류협력 다변화가 필요함
- 국제교류 확대 추진 시 기존 조례는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로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하며 특히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의 변화(중화권교류→국제교류)가 요구되므로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시가 경쟁력과 비전을 가진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명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목적, 정의, 기본목표, 적용범위, 책무…………… (안 제1조 ~ 제5조)
 - 국제화 촉진, 국제교류협력, 자매도시, 우호도시의 정의를 규정

-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 및 기본 목표 마련

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명시… (안 제6조)

라.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명시…………… (안 제7조 ~ 제8조)

마.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위탁 및 재난재해 구호 지원 근거 마련… (안 제9조 ~ 제10조)

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8조)

- 사전검토, 사전교류, 시의회 의결, 사후 관리, 협정의 파기 등 규정

사. 국제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제29조)

-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해촉, 회의 개최, 수당 등 필요사항 규정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개정조례안 : 불 입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의견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기획예산과) : 의견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개선사항없음
 - 여성가족과-38655(2019.10.2.) : 2019A전남목포050

7.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19. 10. 14 ~ 11. 4. (21일간)

9.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안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용당동),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92),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061-270-8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인적, 물적,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목포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각종 국제대회 등의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전략
7.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8.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

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공동 기념사업
3. 국제통상 및 관광 활성화 사업
4. 민간단체 및 목포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5.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사 및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6.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인 또는 경제 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국제교류협력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협력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시장은 자매도시 등이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제11조(협정체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③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2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희망하거나 외국도시로부터의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2. 외교적 특수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3.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4.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제13조(사전교류) 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코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 할 수 있다.

제14조(시의회 의결)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협정체결의 효력) 협정체결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16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해야 한다.

제18조(협정의 파기) 시장은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국제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 및 시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국제교류협력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주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기관 및 단체의 장, 분야별 실무담당자, 관계 전문가 등
2.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자
3. 지역경제 관련 유관기관장
4.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5. 국제교류협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목포시의회 의원 및 목포시공무원, 유관기관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1/2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등)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주무과장, 서기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26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매도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관계에 있는 도시들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본다.

